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87

2025. 3. 21.(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정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3월 13일

-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정 의원)

가. 제안사유

○ 수동적·부정적인 언어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단절’이라는 단어의 사용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않는 상태”라고 인식되며 여성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도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 영향

을 미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 생활 등을 조화시키며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목적 조항에서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예방’을‘경력 유지’로 수정함(안 제1조)

❍ 조례 전반에서‘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용어를 수정함
(안 제2조～제4조, 제6～제7조, 제9조～제10조)

❍ 지원사업에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을 포함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약칭: 여성경제활동법)에서는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과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특히, ‘경력단절’이라는 용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는 사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육아, 가사, 가족 간병 등과 같이 여성들이 주로 담당해온 무급 돌봄이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이 지속되지 못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 **경력 유지**와 **취업 지원** 등으로의 조속한 정책 추진 전환 및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있음.

○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국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경력단절'대신'경력 유지' 등으로 관련 용어를 수정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부정적인 용어 사용의 변경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당한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데 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을 현행'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조례안 전체적으로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변경**하여 여성 경제활동 중단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개선하고 상위법 및 현행 조례의 주요 정책추진 방향인 '경력단절 예방'의 맥락을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조 '목적'조항에서 상위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수정함.

-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사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6조**

(실태조사), 제7조(지원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 제10조(포상) 등 조례 전반에서'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용어를 수정함.

- 안 제7조제3호에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조성 사업을 명시한 바,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 제1항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 지원사업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부칙 안 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와 제3조(경과조치)는 현행 조례에 따른 시책 수립,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의 효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임.

<개정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은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로 본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거친 바 절차상으로 타당하며,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속에 내포된 ‘**경력 공백으로 인한 능력 저하**’의 부정적 의미로 인해 경력단절여성 등에 갖는 잘못된 선입견은 경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취업을 원하지만 기회에서 배제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단절’ 대신 여성이 가진 고유하고 다양한 경험·역량·전문성 등을 부각시킬 수 있는‘보유’로 변경해, 여성의 고용 및 근로활동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충청북도”를 “충청북도”로, “경력단절 예방을”을 “경력 유지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력단절 예방”이란”을 ““경력 유지”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 예방을”을 “경력 유지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력단절 예방을”을 각각 “경력 유지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 예방을”을 “경력 유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인정된”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제9조제1항 중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한다.

제10조 중 “경력단절 예방”을 “경력 유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은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충청북도 -- 경력 유지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	3. “경력 유지”란 ---.

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경력 유지를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 경력 유지를 --.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 - 경력 유지를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경력 유지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 경력 유지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	4. 경력보유여성등--
5.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창업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	5. 경력보유여성--------------------------------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계부서 및 도내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6. 경력보유여성등--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구직자 등 대상 홍보활동 지원	7. 경력보유여성등--
8. 경력단절여성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운	8. 경력보유여성---

영 지원	-
9.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9. ------ 경력보유여성등---- ---------------------- 인정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 ----------------- 경력 유지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 -------- 경력 유지---------- ------------------------------ ------------------------------ ----------.

관 계 법 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3.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

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의 취업 실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관한 사항
3.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경력단절여성등의 구직활동과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관한 사항
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 제1호

○ **사　유**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여 조문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므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 경 숙 (043-220-3910)